

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12월 7일
-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8일

3. 제안이유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 수행시 기술적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

4. 주요내용

- 자문단의 기능(안 제2조)
 -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
- 구성(안 제3조)
 -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- 자문단 회의(안 제6조)
 - 매년 상·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 개최

- 수당 등 지급(안 제13조)
 - 자문단회의, 자문,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
- 소방방재청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보함에 따라 (2004. 9. 16)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
-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기술적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